

(앞쪽)

제 호
사료검사원증
사 진 3cm×4cm (모자를 벗은 상반신으로 배경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)
성 명
기 관 명

55mm×85mm[PET-G 카드(연노란색) 또는 백상지(50g/m²)]

(뒤쪽)

소속/직급:		
성명:		
생년월일:		
위 사람은 「사료관리법」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른 사료 검사원임을 증명합니다.		
년	월	일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특별시장·광역시장· 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 특별자치도지사		직인
1.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.		
2. 이 증을 소지한 사람은 「사료관리법」 제19조제2항, 제21조제2항, 제24조 또는 제27조제1항·제2항에 따라 사료의 제조업자·수입업자·판매업자 등에게 질문하거나 시설과 서류 등을 검사할 권한이 있습니다.		
3.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.		